

보도시점 (전매체) 2. 11(수) 14:00

중기부, 지역의 친환경 농업 성공특구인 홍성군을 찾아 현장소통

- 노용석 제1차관, 전년도 최우수 특구인 홍성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방문, 지역 관계자를 격려하고 간담회 통해 현장 애로 청취
- 이어,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 격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11일(수)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 저탄소·유기농업 특구’를 방문해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 및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 11.(수) 14:00~15:00, 홍성환경농업마을 등 특화사업 현장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홍성군수, 특구 기업 및 운영 관계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진공 충남지역본부장 등
- (주요내용) 특구 우수 성과 격려, 현장애로 청취, 특화사업 현장 시찰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 제도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특화특구는 '04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공주 알밤특구, 여주 쌀산업 특구와 같은 특구가 그 중 하나이며,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과 지역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노용석 제1차관이 방문한 홍성 저탄소·유기농업 특구는 2014년 지정된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로, 홍성 유기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가공·관광을 융합한 6차 산업화 선도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기부가 매년 실시하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22년에 이어 작년에도 171개 특구 중 최상위 등급(9개)인 '탁월 특구'로 선정되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특구 사업장 현장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홍성군 특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특화특구 제도 개편 방안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오리농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주형로 홍성 환경농업마을 대표 등 유기농업 관련 특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이후 참석자들은 오리농법을 적용 중인 논과 환경농업교육관 등 현장을 둘러보며 저탄소 유기농업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 차관은 특구 방문에 이어 인근에 위치한 광천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였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설 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노용석 제1차관은 “홍성군의 특구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과 관광을 결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지역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홍성군처럼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가, 특구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있도록 중기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책임자	과 장	추경훈 (044-204-7590)
		담당자	사무관	장좌영 (044-204-7591)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윤준구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044-204-7901)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장준수 (041-415-0630)
		담당자	주무관	이경훈 (041-415-0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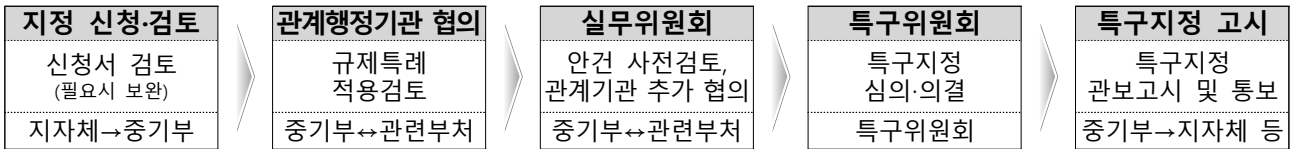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역특구 지정절차 >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 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 현재 171개 특구*(135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6.2. 기준)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30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9개 특구가 해제·통합

< 지역별 특구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	6	5	2	3	1	4	19	13	16	16	12	29	20	13	2	171